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986

제출년월일: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 시설규모 : 70㎡(신목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사무실외 기타 시설은 복지관과 공동 사용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조리실, 컴퓨터실 등

○ 인력운영 : 5명(센터장 1명, 과장1명, 대리1, 사회복지사2명)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0. 1. 1.~ 2022.12.31.)

- 위탁업무
 -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 · 운영 및 사업일체
 -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운영
 - 한글·컴퓨터 교육 등, 의료지원
 - 문화체험 행사 등
- 소요예산 : 258,233천원(20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77,919천원, 운영비 10,888천원, 시업비 69,426 천원
- 수탁기관선정방법 : 재계약(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19.07.22)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19.07.30)

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 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 간의 네트워크 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한 한국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 하여 재계약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재위탁 추진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5679, 2019, 5.09.)

※ 작성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진희원 (☎ 2133-5078)